

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-8호

「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9일

의성군의회 의장

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「전통무예진흥법」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, 발전시키고 나아가 의성군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라.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(안 제5조)

3. 의견 제출

○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6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【우편번호 : 37337】

의회사무과 (☎ 054-830-6391)

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무예진흥법」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·발전시키고 나아가 의성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무예”란 「전통무예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.
2. “전통무예단체”란 전통무예를 계승, 보급,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,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성군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의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군수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성군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
2.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
3.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
4.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

군민, 전통무예지도자,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) ①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통무예단체 육성
2.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·양성
3.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학술 교류
4.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
5.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
6.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
7.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